



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

[시행 2024. 11. 27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58호, 2024. 11. 27., 제정]

고용노동부(공공노사관계과), 044-202-7653

□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

조합원 규모*	연간 시간 한도	연간 사용가능인원
99명 이하	최대 800시간 이내	•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. •다만, 조합원수 99명 이하 구간의 사용가능인원은 '최대 2명'으로, 조합원수 100명 ~ 999명 구간의 사용가능인원은 '최대 3명'으로 정한다.
100명~299명	최대 1,500시간 이내	
300명~999명	최대 2,000시간 이내	
1,000명~2,999명	최대 4,000시간 이내	
3,000명~4,999명	최대 9,000시간 이내	
5,000명~9,999명	최대 12,000시간 이내	
10,000명~14,999명	최대 14,000시간 이내	
15,000명~29,999명	최대 20,000시간 이내	
30,000명 이상	최대 25,000시간 이내	

* '조합원 규모'는 「교원노조법」 제5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에 재직 중인 조합원 수를 의미한다.

<비고>

- 1. 「교원노조법」 제2조제1호·제2호에 따른 교원의 경우 파트타임을 사용할 시 1,000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한다. 단, 299명 이하 구간은 예외로 한다.
- 2. 「교원노조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의 경우 연간시간 한도에 「고등교육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학생교육·지도, 학문연구, 산학협력 시간 등을 포함한다.

부칙 <제2024-58호,2024.11.27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